

의안번호	2200133
의 퇴 인	유동수 의원
회 답 일	2024.7.3.
추계번호	24E0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서비스 사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

- 재정수입 감소는 2026년 3,206억원으로 예상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2026년에만 세수효과 발생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6
이동통신서비스 사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안 제126조의2제2항)	-3,206

※ 본 추계 결과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한 결과로 실제 소득세 신고자의 이동통신비 사용액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26조의2제2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신설 －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연간 100만원 한도)에 대하여 30%의 소득공제 적용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6조의2제2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본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는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2026년에만 발생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감면 실적

- 2023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3조 9,940억원임¹⁾

1) ① [표 2] 기준 ① 2018년(2017년 귀속)부터 급여수준별로 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중고자동차 구입분이 공제대상에 포함됨
② 2019년(2018년 귀속)부터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되었으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비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신설됨
③ 2021년(2020년 귀속)에는 3월과 4~7월기간 동안 사용액에 대하여 각각 30~80%, 80%의 공제율을 적용(기존 15~40%)하고, 총급여규모별 공제한도를 30만원 확대함
④ 2022년(2021년 귀속)에는 공제항목별 공제율이 정상화(15~40%)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 사용분에 대해 10% 공제율 추가 적용

- 2021년과 2023년 조세지출액은 전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조세지출 실적치로, 각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지원 대책,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함에 따라 해당연도 조세지출 실적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

[표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액

(단위: 억원, %)

	2017 실적	2018 실적	2019 실적	2020 실적	2021 실적	2022 실적	2023 잠정
조세지출액	18,537 (0.5)	21,176 (14.2)	22,553 (6.5)	24,698 (9.5)	31,882 (29.1)	31,675 (-0.6)	39,940 (26.1)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표 3]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요, 2024년 기준

제도	항목	공제제도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3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관람료(‘도서 등’) 사용분	30%
	· 전통시장 사용분	40%
	· 대중교통 사용분	40%
	· 전년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¹⁾	10%
소득공제 한도	· (기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기본)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추가) ‘도서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 용분	300만원 추가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200만원)
	· 전년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¹⁾	100만원
일몰 기한		2025.12.31.

주: 1) 2024년에 한하여 2024년 사용액이 2023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10% 공제율 추가 적용(공제한도 100만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⑤ 2023년(2022년 귀속)에는 소비활성화를 위해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각각 20% 추가공제 적용

(2) 추계 방법

- 국세통계연보 및 재정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이동통신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국세통계연보는 현행 기준 총급여규모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인원, 공제금액 자료만을 제공하므로, 공제항목 신설에 따른 세수변화는 재정패널조사 원자료(2021년 귀속)를 활용
- 재정패널조사에서 조사된 가구 단위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동통신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자 수 및 평균 이동통신비 사용료 추정
 - 재정패널조사 자료로 총급여규모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자 중 이동통신비를 지출하고 있는 자의 비율을 산출하고, 이 비율을 국세통계연보(2022년 귀속) 상의 총급여규모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자 수에 곱해 총급여규모별 이동통신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자 수 추정²⁾
 - 이동통신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이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을 받고 있는 자만 적용 가능
 - 개인의 연간 이동통신비 사용료는 재정패널조사에서 조사하는 가구 단위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을 가구원 단위로 배분한 금액을 바탕으로 추정³⁾
 - 재정패널조사에서 조사하는 가구의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에 기기 할부금(현행 소득공제 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분리할 수 없어 해당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이 개정안에서 정의하는 이동통신비와 같다고 전제⁴⁾
- 총급여규모별 1인당 평균 이동통신비(추정치)에 공제율(30%) 및 한계세율을 곱한 뒤 적용대상자 수(추정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기준연도 세수효과 추계

2) 재정패널조사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가구(8,784 가구) 중 휴대전화 요금을 지출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6,151 가구)의 비율은 약 70%인 것으로 조사됨

3) 가구별로 가구 총 근로소득에서 각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후, 동 비율을 가구 단위 통신비에 곱해 가구 통신비를 가구원별로 배분

4) 현행 이동통신서비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휴대폰 기기 할부금 및 소액결제 등의 비용은 소득공제(계좌납부 30%, 신용카드 납부 15%) 대상에 포함

- 향후 세수효과는 기준연도 기준 세수효과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인원 증가율을 곱하여 추계
 - 향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인원은 2018~2022년 연평균 증가율(4.8%)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

(3) 추계 결과

-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2년 기준 2,65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향후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4.8%)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

[표 4]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근로소득세, 2022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액 규모	2022년 귀속 국세통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인원 ¹⁾	이동통신비 지출 인원 ²⁾	연평균 이동통신비 지출 금액 ³⁾	1인당 공제 금액 ⁴⁾	1인당 과표 ⁵⁾	한계세율 ⁵⁾	세수효과 (억원)
	A	B	C	$D=\min(C,1)\times 30\%$	E	F	$G=-(D\times F\times B)$
합계	9,389,882	6,133,763	—	—	—	—	-2,658
1천만 이하	—	0	0.54	0.16	5	6%	0
1.5천만 이하	2,208	1,506	0.77	0.23	5	6%	0
2천만 이하	138,578	104,411	0.87	0.26	7	6%	-16
3천만 이하	1,516,764	977,552	0.96	0.29	11	6%	-170
4천만 이하	1,665,420	1,125,789	1.05	0.30	17	15%	-507
4.5천만 이하	792,887	532,570	1.18	0.30	22	15%	-240
5천만 이하	719,792	469,753	1.35	0.30	25	15%	-211
6천만 이하	1,197,200	768,624	1.25	0.30	30	15%	-346
8천만 이하	1,554,540	922,032	1.47	0.30	41	15%	-415
1억 이하	882,722	556,694	1.72	0.30	58	15%	-251
2억 이하	854,760	627,132	1.74	0.30	96	24%	-452
3억 이하	51,415	37,723	3.00	0.30	197	35%	-40
5억 이하	11,313	8,300	3.00	0.30	327	38%	-9
10억 이하	1,950	1,431	3.00	0.30	607	40%	-2
10억 초과	333	244	3.00	0.30	1,964	45%	0

주: 1)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자 수

2)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총급여규모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자 중 이동통신비 지출이 있는 자의 비율을 구한 뒤, 동 비율을 국세통계연보 상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인원(A)에 곱하여 추정, 다만, 2억원 초과 구간은 표본 수가 적어 동 비율이 산출되지 않아 1억 초과 2억 이하 구간의 비율과 동일하다고 가정

3)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총급여규모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자 중 이동통신비 지출이 있는 자의 연간 휴대폰 요금 추정, 다만, 3억원 초과 구간은 표본 수가 적어 이동통신비 지출 금액 추정이 되지 않아 2억 초과 3억 이하 구간의 지출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4) 총급여규모별 연간 이동통신비 지출금액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30%의 공제율 적용하여 산출

5) 현행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총급여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 및 1인당 과세표준에 대응하는 한계세율을 나타냄

자료: 국세청, 「2022 국세통계연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15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2년 귀속 기준 세수효과에 향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 증가율을 반영하여 추계할 경우 2025년 귀속 기준(2026년 연말정산 시 세수효과 발생) 세수효과는 -3,20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2025
이동통신서비스 사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안 제126조의2제2항)	-3,206

※ 본 추계 결과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한 결과로 실제 소득세 신고자의 이동통신비 사용액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지원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지원	02-6788-4662	jwpark1209@assembly.go.kr